

행정처분기준표(제26조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한 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(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의하며,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 또는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영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(이미 처분기간이 만료한 처분,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)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된다. 다만, 새로운 영업자(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한다)가 그 영업의 승계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라.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업종별 행정처분기준

가. 복권발행업,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

위 반 사 항	행 정 처 분 기 준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(1) 법 제3조(시설기준)위반	개수 또는 개선명령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
(2) 법 제4조제2항(중요사항 변경허가) 위반			
○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	개선명령	영업정지 10일~15일	허가취소
○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장소를 변경한 때	허가취소		
○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방법을 변경한 때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	
○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당첨금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	

상를표를 변경한 때 ○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 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를 변경한 때	영업정지 10일~15일	허가취소	
(3) 법 제5조(허가의 요건)의 위반 ○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광호텔 또는 종합휴양업소의 등록이 취소 된 때 ○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여객선의 외국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 된 때 ○기타 허가의 요건에 위반한 때	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10일~15일	허가취소	
(4) 법 제6조(허가의 제한)에 해당하게 된 때	허가취소		
(5)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개선명령	영업정지 10일~15일	허가취소
(6) <삭제>			
(7) 법 제11조(영업의 방법 및 제한) (가)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 반한 때 (나) 당첨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(다)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, 영 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때	영업정지 10일~15일 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	허가취소
○영업시간을 위반하여营业을 한 때 ○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 업을 한 때	영업정지 10일~15일 허가취소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
○19세 미만의 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여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 킨 때 ○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한 때	영업정지 10일~15일 영업정지 10일~15일	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 허가취소
○회전판돌리기업 － 영업소에 설치한 사행기구의 대 수가 제2조에서 정한 대수를 초 과한 때	개선명령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

(8) 법 제12조(영업자의 준수사항)위반			
○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	허가취소		
○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때(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 한한다)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	
○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한 때(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 한한다)	허가취소		
○회전판돌리기 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때	영업정지 10일~15일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
○과도한 사행성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때	개선명령	영업정지 20일	허가취소
(9)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·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	영업정지 10일~15일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
(10)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·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	영업정지 10일~15일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
(11) 영업정지처분 기간동안에 영업을 한 때	허가취소		
(12)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지시·명령에 위반한 때	개선명령	영업정지 20일	허가취소

나. 사행기구 제조·판매업

(1) 사행기구제조업

위 반 사 항	행 정 처 분 기 준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(가) <삭제>			
(나)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			
○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	개선명령	영업정지 10일~15일	허가취소
○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(다)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	허가취소		

허가제한사항에 해당하는 때 (라)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	개선명령	영업정지 10일~15일	허가취소
(마) 및 (바) <삭제> (사)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	
(아)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(자)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(차)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한 때	영업정지 20일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
(타)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·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	영업정지 20일~30일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(파)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·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(하)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	허가취소		
(거) 기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지시·명령에 위반한 때	개선명령	영업정지 20일	허가취소

(2) 사행기구판매업

위 반 사 항	행 정 처 분 기 준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(가) <삭제> (나)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○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○판매품목의 변경	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10일~15일 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 허가취소

(다)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항에 해당하는 때	허가취소		
(라)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	개선명령	영업정지 10일~15일	허가취소
(마) <삭제>			
(바)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	개선명령	허가취소	
(사)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	
(아)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(자)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(차)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	영업정지 20일	영업정지 1월	허가취소
(카)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·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	영업정지 20일~30일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(타)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·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(파)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한 때	허가취소		
(하)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지시·명령에 위반한 때	개선명령	영업정지 20일	허가취소